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생활동 편의공간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공사명: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생활동 편의공간 조성공사
나. 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경기창작캠퍼스
다.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추정금액: 215,179,373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비고
215,179,373원	195,617,612원	19,561,761원	-	-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내역서 참조

-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전문건설업체의 공정전반에 대한 시공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마. 기초금액: 215,179,37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전자입찰,소액수의견적,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나.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08. 21. 18:00 ~ 2025. 08. 27. 10:00
-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이용 제출
-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08. 27. 11:00 경기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라. 유의사항: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3조 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해당없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계
2,963,701	2,334,737	1,514,780	302,348	4,151,750	400,505	11,667,821

-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제9절에 정한바에 따라‘9-3-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 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 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협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9장 9절 9에 의거 계약상 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합니다.
-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 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본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5.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신영미(☎031-231-7228)
 - 공사에 관한 사항: 경기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김지연(☎032-890-4826)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재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차.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실[서은경 e-mail : tourism@ggcf.or.kr / ☎ 031-231-7285]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